

# 의료 해외진출 [ ] 신고서 [ 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해당되는 [ ]에 √ 표를 합니다.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의료기관 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법인명	법인등록번호
	법인 주소	

의료기관	의료기관 명칭		의료기관 종류	
	의료기관 주소			
	담당자	성명	부서명	직위
	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주소

진출구분	[ ]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	[ ]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
	[ ]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	[ ]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
	[ ]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	[ ]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
	[ ]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	[ ]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
	[ ]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	

진출내용	국가 명칭	지역 명칭
	진출형태	투자예정규모 (백만원)

해외 연락사무소	명칭	연락처
	주소	

변경내용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

구분	변경연월일	변경 전	변경 후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 고 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

귀하

<p>첨부서류</p>	<p>1. 신고 시</p> <p>가.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</p> <p>1)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: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. 다만,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·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·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</p> <p>2)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: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</p> <p>나.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</p> <p>다.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(법인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변경신고 시: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p>	<p>수수료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</p>	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작성 방법**

1.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, 법인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.
2.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류란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진출내용의 국가 명칭란 및 지역 명칭란은 영어로 적습니다.
4. 진출내용의 진출형태란에는 단독투자, 합작·합자투자, 인수합병, 사용권 계약(라이선싱), 가맹(프랜차이즈), 컨설팅계약, 위탁 경영, 일괄수주 또는 그 밖의 진출형태로 구분하여 적고, 복수의 진출형태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출형태를 모두 적습니다.
5. 해외 연락사무소의 명칭란 및 주소란은 영어로 적습니다.
6. 변경내용의 구분란에는 신고인, 의료기관, 진출구분, 진출내용 또는 해외 연락사무소 중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적습니다.

**처리 절차**

